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하수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등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문을 삭제하여 하수도 사용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에 위임(근거)없는 조항 삭제

-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안 제3조)
-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안 제6조)
- 과태료 (안 제36조)

나. 상위 법령의 용어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 「하수도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관거 → 관로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 「물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를 “(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관거”를 “시장은 하수관로”로, “준설은”을 “준설을”로, “침수, 장마”를 “침수·장마”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시행규칙”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호”를 “제1항제1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의무자”를 “설치자”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를 “구미시”로 한다.

제19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영 제24조제5항”을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35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 (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 ----.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구미시장(이하 “시	<삭 제>

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의 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일시사용신고) -----

----- 구미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
- 하수관로-----
----- 하수관로 -----.

② 시장은 하수관로-- 준설을 -

----- 침수·장마 -----

-----.

<삭 제>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3. (현행과 같음)

② -----

-----, --- 제1항
제1호-----.

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략)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신 담

③ (현행과 같음)

④ -----

설치자-----.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1. (현행과 같음)

2. -----

----- 구미시 -----

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 다. (생략)

3. (생략)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생략)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가.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1. -----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

2. ~ 5. (생략)

② (생략)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하수
관로 -----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하수관로 -----

-하수관로-----
--- 하수관로 -----
-----하수
관로-----

-----.

제35조(권한의 위임) -----

-----.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
신고의 접수

3. (생략)

4. 제5조에 따른 하수관거 준설
등

5. 제6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
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6. 삭제

7. ~ 21. (생략)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
한 자

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
료, 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 이를 각각 추징하고,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

<삭제>

3. (현행과 같음)

4. ----- 하수관로 -----

<삭제>

7. ~ 21. (현행과 같음)

<삭제>

료의 부과는 위반 사항에 따라
병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
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과태료)

- ① 삭제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⑦ 삭제

⑧ 삭제

□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 ⑦ (생략)

⑧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관 실·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입 안 자	과 장	이 상 곤
	담 당	장 영 재
	담 당 자	이 상 윤 (480-4535)